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7. 1. 6.>

화물자동차 [ ] 운송사업 운송약관 / [ ]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/ [ ]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[ ]신고서 / [ ]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
신고인	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신고내용	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	
	변경 사유	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조 ·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·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 · 운송주선약관 · 운송가맹약관을 신고(변경신고)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
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 귀하
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첨부서류	1. 운송약관 ·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2. 운송약관 ·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의 신 · 구 대비표 1부 (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2,000원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수리	→	통보
신고인		처리기관: 국토교통부 ·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)						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